

# 고 시

## 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-63호

###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(서귀포중앙 행복주택)

『공공주택 특별법』 제35조제1항 및 주택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「서귀포중앙」 공공주택건설(행복주택) 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4년 1월 26일

국 토 교 통 부 장 관

1. 사 업 명 : 서귀포중앙 공공주택건설사업 (행복주택)

2. 사업시행자 의 대표자 성명 및 주소 (변경없음)

가.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: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

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오영훈

나. 주소 :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(충무공동)

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(연동)

3. 사업개요

구 분	기 정	변 경	비 고
가. 대지위치	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269-4번지 일원	좌 동	
나. 사업면적	1,704.80㎡	1,706.30㎡	(증) 1.5㎡
다. 대지면적	1,704.80㎡	1,706.30㎡	(증) 1.5㎡
라. 연 면 적	13,533.51㎡	좌 동	
마. 사업규모	아파트 1개동 (행복주택 80세대, 9층 이하) 및 공공업무시설	좌 동	
바. 구 조	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	좌 동	
사. 사 업 비	33,600,000천원 (주택도시기금 4,074,400)	좌 동	
아. 사업기간	사업승인 고시일 ~ 2024. 3.	좌 동	

4. 기 타 : 관계 도서는 제주도청 도시건설국 건축지적과, 서귀포시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(064-710-1120)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.